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행복나눔과장)
- 발의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10.(월) ~ 7. 14.(금)

2. 개정이유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노인무료급식소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전반)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문리적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무료급식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에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목적이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본문의 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흑한기 및 흑서기의 탄력적 운영을 단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자원봉사센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식소 운영목적에 비추어 등록여부를 지원조건으로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¹⁾이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무료급식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1) 법제처 의견 14-0017, 노인무료급식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급식소 자원봉사를 위해 건강진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근거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 등